

수원지방법원 2017. 3. 9 선고 2016나51696 판결 [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1. B

2. 한국공인중개사협회

변론 종결 2017. 2. 23

판결선 고 2017. 3. 9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. 1. 14. 선고 2015가단211370 판결

주 문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원고의 2016. 12. 1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에게,피고 B는 7,000만 원,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(이하'피고 협회'라 한다)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돈중 1, 000만원 및 위각돈에 대하여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

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변경의 불허

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,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97다44416판결 등 참조),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(민사소송법 제263조)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원고는 당초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묘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,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였으나,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2016. 12. 16. 이 법원에, '기존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피고 B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6. 2. 20.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F에게 매도하고, 2016. 3. 1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,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'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그러나 추가된 위 청구원인은 기존의 법률관계가 아닌 제1심 판결 이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 다른 쪽의 변형물 또는 부수물인 것도 아니며, 두 청구를 구성하는 기초적 사실관계도 중복되지 않고, 기존 청구에 대한 소송자료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소송자료로 사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심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그 두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다.

따라서 이 부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

2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,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지상목판사 송창현판사 김선희